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이성윤 · 민형배 · 안호영
한병도 · 윤준병 · 문정복
이원택 · 서영교 · 김기표
박지원 · 박균택 · 최기상
장경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.

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,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 · 부당한 장기화 · 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,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

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.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등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사기관에서 입건 개시된 피의자로서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: 1개월 이내. 다만,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피의자 이외의 자로서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: 1개월 이내. 다만,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연장으로 출국금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“범죄수사”를 “수사기관에서 입건 개시된

피의자로서, 범죄수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, “당사자”를 “그 피의자”로 한다.

제4조의5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이의신청의”를 “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,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의 기한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7(출국금지심의위원회)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심의와 제4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출입국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
- ③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④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(생 략) ② <u>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 ② <u>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</u> 1. <u>수사기관에서 입건 개시된 피의자로서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: 1개월 이내. 다만,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2. <u>피의자 이외의 자로서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: 1개월 이내. 다만,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</u>

1. · 2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4조의2(출국금지기간의 연장)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② · ③ (생략) 제4조의4(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) ① · ② (생략)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범죄수사</u>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 다만, 연장기	<u>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3. · 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2(출국금지기간의 연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이 경우 그 연장으로 출국금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4(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수사기관에서 입건 개시된 피의자로서, 범죄수사</u>----- -----.
---	--

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
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
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 (생 략)

제4조의5(출국금지결정 등에 대
한 이의신청) ① 제4조제1항
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
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
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
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
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
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
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
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
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
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
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
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
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
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후단
신설>

--1개월-----그 피의
자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5(출국금지결정 등에 대
한 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30
일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
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-----
-----<단서 삭제>
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
고 결정되면 즉시 출국금지를
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
장을 철회하여야 하고, 그 이의
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

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,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의 기한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의7(출국금지심의위원회)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심의와 제4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출입국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을

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